의안번호	2203128
의 뢰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4. 9. 23.
추계번호	24A31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함(제1호가목)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 법률 규정상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1] 개정안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현행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말함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2] 및 제3조제1항[3]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에

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450호) 검토보고」, 2021.2.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포함됨

❑ 다만, 현행「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라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4]에 따르면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등"임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재정사업과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면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

[표 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요 재정사업 및 연구개발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	회계기금 (소관)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예산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그린카)	일반회계 (산업부)	22,490	64,015	86,820	132,050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검증 플랫폼 기술개발(R&D)	일반회계 (산업부)	—	4,815	4,713	2,132
수평적EV(전기차)산업생태계조성	일반회계 (산업부)	—	1,960	2,219	2,510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일반회계 (산업부)	—	2,490	2,490	2,49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 개정안의 입법 취지 또한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는데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재정사업의 확대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 현황

(단위: 대)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기이륜자동차	11,993	14,005	18,129	15,917	8,765

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2023년 국내 전기이륜차 판매 현황”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편,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무공해차 보급사업”(2024년 예산 2조 3,193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사업에는 전기이륜자동차 보급(2024년 예산 32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